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1116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9. 4.

판결 선고202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표시 1, 2, 9, 6, 7, 8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
부분 10㎡를 인도하고,
나. 2023. 10. 13.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3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)

판사차승우

별지